

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389호
----------	-------

제출연월일 : 2006. 1. .

제 출 자 : 충청북도교육감

□ 개정이유

- 시·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표준정원(보정정원)이 재산정 고시(교육인적자원부 지방교육혁신과-2206, 2005. 12. 21)됨에 따라 표준정원 범위 내에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변경하고자 함

□ 주요내용

- 충청북도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2,985명에서 87명이 증원된 3,072명으로 함(안 제2조)
 - 정원의 총수 : 2,985명 ⇒ 3,072명(증 87명)
 - 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 : 변동없음
 - 본청, 지역교육청, 직속기관, 지역소속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 : 2,972명 ⇒ 3,059명(증 87명)

□ 개정근거

-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, 제17조, 제19조
-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
- 시·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의 표준정원 및 보정정원
[교육인적자원부 지방교육혁신과-2206, 2005.12.21)]

☐ 개정 조례안 : 불임

☐ 참고사항

- 신·구조문대비표 : 불임
- 관계법령 발췌서 : 불임

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중 “2,985명”을 “3,072명”으로 하고, 동조제2호중 “2,972명”을 “3,059명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정원의 총수) 도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<u>2,985명</u> 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. 1. (생략) 2. 본청, 지역교육청, 직속기관, 지역교육청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: <u>2,972명</u>	제2조(정원의 총수) <u>3,072</u> 명..... 1. (현행과 같음) 2. <u>3,059명</u>

관계법령 발췌서

□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(개정 2004.1.29 대통령령 제8247호)

제14조(표준정원의 책정) ①교육감은 정원관리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정원(이하 “표준정원”이라 한다)의 범위안에서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.

②교육감은 교육행정수요의 급격한 증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정원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보정한 정원을 초과하여 정원을 책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월 또는 7월에 하여야 한다.

④지방자치단체의 폐치·분합, 경계변경 또는 종류의 변경으로 인하여 시·도교육청의 표준정원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시·도교육청의 표준정원 산정방법이 마련될 때까지 학교수·학급수 및 지역교육청수 등이 유사한 다른 시·도교육청의 표준정원을 참작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정원에 의할 수 있다.

제19조(정원의 규정) ①시·도교육청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1. 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

2. 본청, 지역교육청, 직속기관,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

②직급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범위안에서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기관별로 당해 시·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□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(개정 2004.1.30 교육인적자원부령제824호)

제3조(표준 정원) ①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·도 교육청별 지방공무원의 표준정원은 별표 1의 산식에 의하여 정한다.

③영 제14조제2항에서 “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보정한정원”이라 함은 표준정원에 보정비율 1.03을 곱하여 산출한 정원(이하 “보정정원”이라 한다)을 말한다.

④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정원 및 보정정원을 매 2년마다 8월중에 산정하여 고시한다.

□ 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의 표준정원 및 보정정원(교육인적자원부 지방교육혁신과2206, 2005.12.21)

구 분	표준정원	보정정원	비 고
충청북도교육청	3,072	3,164	